

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

1. 피승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승계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3년 이내에 피승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일	행정처분 내용	위반내용

나.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

적발일	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비고

- 1)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“해당 없음” 이라고 적습니다.
- 2)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“해당 없음” 이라고 적습니다.
- 3)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승계인과 승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.
2. 승계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의3제4항 본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라 피승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피승계인 성명
소재지

(서명 또는 인)

승계인 성명
소재지

(서명 또는 인)